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의약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34호
- 나. 제출자 : 정재동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11. 12.
- 라. 회부일자 : 2024. 11. 12.

## 2. 제안이유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폐의약품 수거 장소에 동 주민센터를 추가 함(안 제4조제2항)
- 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다.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라. 구 홈페이지,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 4.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4조의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장소를 기존 약국, 보건소에서 약국, 보건지소를 포함한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에게 확대된 수거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의무를 규정함.
  -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안 제5조 제5항에서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해 홍보하도록 규정함.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한 종류임.

-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하나인 폐의약품은 2022년까지는 서울시 약사회에서 수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 낮은 수거율과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서울시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주민센터, 보건소 등으로 변경하였음.
-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24년 9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폐의약품 수거 업무를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기후환경 본부 자원순환과로 이관하였음.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폐의약품 수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붙임 1. 관계법령 1부.
- 2.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 현황.
  - 3. 폐의약품 배출 안내문 1부. 끝.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11. 2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7.] [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30.>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중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8. 5. 28.>]

연번	설치 위치	해 당 동	주 소	비 고
1	금천구청	시 흥 1 동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구 청
2	가산동주민센터	가 산 동	금천구 가산로 129	주 민 센 터
3	독산1동주민센터	독 산 1 동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11	주 민 센 터
4	독산1동주민센터	독 산 1 동	금천구 한내로 69-17	주 민 센 터
5	독산2동주민센터	독 산 2 동	금천구 독산로 179	주 민 센 터
6	독산3동주민센터	독 산 3 동	금천구 독산로 317	주 민 센 터
7	독산4동주민센터	독 산 4 동	금천구 독산로 232	주 민 센 터
8	시흥1동주민센터	시 흥 1 동	금천구 시흥대로58길 36	주 민 센 터
9	시흥2동주민센터	시 흥 2 동	금천구 금하로 764	주 민 센 터
10	시흥3동주민센터	시 흥 3 동	금천구 시흥대로18길 40	주 민 센 터
11	시흥4동주민센터	시 흥 4 동	금천구 독산로36길 14	주 민 센 터
12	시흥5동주민센터	시 흥 5 동	금천구 금하로24길 6	주 민 센 터
13	보건소	시 흥 1 동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보 건 소
14	보건분소(독산분소)	독 산 3 동	금천구 독산로87길 27	보 건 소
15	보건지소(박미지소)	시 흥 3 동	금천구 시흥대로12길 10-5	보 건 소
16	금천노인종합복지관(시립)	시 흥 1 동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복 지 관
17	호암노인종합복지관(구립)	독 산 4 동	금천구 독산로72길 86-5	복 지 관
18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구립)	독 산 1 동	금천구 한내로 69-15	복 지 관
19	금천50+ 센터	독 산 1 동	금천구 범안로17길 22	공 공 기 관
20	금천 어울림 복지센터	시 흥 1 동	금천구 시흥대로73길 30	공 공 기 관
21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독 산 4 동	금천구 독산로54길 188	공 공 기 관
22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독 산 1 동	금천구 시흥대로79길 32	공 공 기 관
23	독산 도서관	독 산 4 동	독산로54길 114	공 공 기 관
24	가산 도서관	가 산 동	가산로5길 43	공 공 기 관
25	금천이랜드해가든아파트	독 산 1 동	금천구 벚꽃로6길 3	아 파 트
26	벽산3단지아파트	시 흥 2 동	금천구 탑골로 84	아 파 트
27	시흥베르빌아파트	시 흥 1 동	금천구 시흥대로77길 23	아 파 트
28	희명병원	시 흥 1 동	금천구 시흥대로 244	의 료 기 관

이것만  
기억하세요!

#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안내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남은 약은 **폐의약품 수거함** 또는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 배출 방법



### 알약, 가루약

- ☑ 일반봉투에 담아 '폐의약품' 표기 후 가까운 우체통 또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



### 물약, 안약, 연고

- ☑ 액체류의 약은 우체통에 넣지 말고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  
\* 우체통에 배출시 다른 우편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배출 장소



### 우체통

- ☑ 인터넷우체국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가까운 우체통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 폐의약품 수거함

- ☑ 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분)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



일반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표시하고 버려 주세요 | 물약은 우체통에 버리면 안돼요